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, 제14조(건축신고), 제19조(용도변경), 제20조(가설건축물) 등을 위반한 건축주(행위자)에 대하여 행정처분(시정명령, 사전통지, 이행강제금 부과 등)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1.

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

- 1. 제 목 :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. 8. 21. ~ 2026. 9. 10. (20일간)
- 3. 공시송달대상자

성명 (법인명)	주 소	처분명	내 용	송달불 능 사 유
조순*	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***, ***동 ***호	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	- 효자동1가 600-1 - 철파이프조/주거시설/105.5㎡	폐 문 부재

4. 공시송달내용

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(☎063-220-5493)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